규정/REGULATION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관련 항목: COB-RA, COF-RA, IGN, IGO-RA, JPC-RA, JPD-RB
책임 부서: Office of the School System Medical Officer

오피오이드 과다복용 증상이 있는 사람을 위한 응급 처치
Emergency Care for Individuals Experiencing Symptoms of Opioid Overdose

I. 목적

오피오이드 역전 약물의 투여를 포함하여 오피오이드 과다복용 증상을 겪고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개인에게 응급 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는 것입니다.

MCPS 가 나록손 또는 기타 오피오이드 과다복용 역전 약물을 입수하여 보관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하고, 특정인이 이를 학생 또는 MCPS 소유지에서 다른 개인에게 투여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II. 배경

오피오이드 과다복용과 그로 인한 사망은 전국적으로, 그리고 Maryland 주 내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Maryland Department of Health(MDH)와 Maryland State Department of Education(MSDE)은 이 전염에 대응하는 데 있어 학교와 School Health Montgomery County Department of School Health Services(SHS)의 역할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2017 년 7 월 1 일부터 시행되는 "Maryland 말하기 시작법 (Start Talking Maryland Act)"은 공립학교가 나록손 또는 기타 오피오이드 과다복용 역전 약물을 입수하여 보관하고, 특정인이 학교 구내에서 학생 또는 다른 개인에게 그것을 투여하도록 훈련하고 권한을 부여하도록 요구합니다.

III. 정의

A. *오피오이드*는 아편 또는 아편 유도체를 함유하는 물질로서, 아편 사용 장애의 통증 완화 또는 치료를 위해 법적으로 처방됩니다.
다양한 형태로 제공될 수 있으며 처방전 없이 불법으로 제조 및 판매될 수도 있습니다.

B. *오피오이드 과다복용*은 다른 물질과 혼합될 때를 포함하여, 유독한 양의 오피오이드가 신체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치를 초과했을 때 발생합니다. 오피오이드 과다복용은 호흡곤란을 포함하여, 생명을 위협하는 증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C. *오피오이드 역전약물(Opioid reversal medications)* (예: 나록손)은 오피오이드 과다복용의 독성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작용됩니다. 나록손은 증상이 오피오이드 과다복용으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개인이 의식이 없는 경우에도 안전하게 투여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나록손은 일회용 비강 스프레이를 통해 가장 많이 투여되지만 주입 가능한 경로를 통해서도 투여할 수 있습니다. 오피오이드 과다복용이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나록손을 투여해야 합니다.

IV. 행정절차

A. 교육

1. 모든 MCPS 학교 교직원과 지정된 MCPS 교직원은 매해 *오피오이드 가성과 대응(Opioid Awareness and Response)* 훈련을 받습니다. 이 트레이닝은 Professional Development Online (PDO)에 있습니다.

2. 각 학교장은 학교 커뮤니티 보건 간호사(School community health nurse-SCHN)와 협의하여 적어도 3 명의 학교 기반 직원을 선발하여 나록손 투여에 대한 추가적인 공식 실습 교육을 받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3. 학교장은 다음과 같은 직원을 선별하도록 권장합니다.

   (1) 학교 후원 및 방과 후 활동과 이벤트에 참석할 가능성이 있는 직원

   (2) 가능하면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훈련을 받은 직원 심폐소생술 인증은 권장되지만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4. 직원의 날록손 투여 교육에 대한 동의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5. 실습교육은 각 학교에 배정된 SCHN 또는 DHHS 또는 교육구 의료 책임자의 MCPS 사무소가 지정한 다른 개인이 제공합니다.

트레이닝과 트레이닝 기록은 DHHS 및 MCPS 절차에 따라 학교 보건 서비스 직원이 유지합니다.

6. 트레이닝 표준에는 오피오이드 과다복용의 징후 및 증상 인식, 비강 스프레이에 의한 나록손 투여, 응급 추적 절차, 필요서류 및 절차가 포함됩니다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B. MCPS 건물에서의 날록손 비축

1. MCPS 는 Maryland 과다복용 대응 프로그램으로부터 직접, 또는 Maryland 과다복용 대응 프로그램을 통해 DHHS 에서 나록손을 공급 받습니다.

2. MCPS 는 DHHS 와 협력하여 문서화를 위한 절차를 수립합니다 -

a) 장소 및 만료 날짜를 포함한 나록손 재고;

b) 약을 사용 가능 여부 확인과 사용 만료일 내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재고의 정기 검사;

c) 재고의 교체

d) 재고에 대한 상세 문서화 *;* 및

e) 자가 휴대를 승인받은 개인의 감독

3. 학교장은 SCHN 과 협의하여 각 학교 건물의 학교 보건실 외의 나록손을 보관하기 위한 적절하고 전략적인 위치를 파악합니다. (예: 기타 응급 의료 장비 또는 용품과 함께)

C. 과다복용이 의심되는 경우, 나록손의 비상 투여

1. 오피오이드 과다복용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 보이는 증상

다음 증상 중 오피오이드 과다복용이라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나록손을 투여하고 911 에 즉시 연락해야 합니다:

a) 의식 없음

b) 매우 작은 동공

c) 호흡이 매우 느리거나, 얕거나, 전혀 없는 경우

d) 구토

e) 말할 수 없음

f) 희미하거나 불규칙한 심장 박동

g) 팔 또는 다리를 절뚝거림

h) 창백하거나 축축한 피부 및/또는

i) 파란색/보라색 입술 또는 손톱

2. 인사담당

a) 오피오이드 과다복용이 의심되는데 의사나 응급 의료 서비스를 즉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학교 커뮤니티 보건 간호사(SCHN) 또는 학교 보건실 담당자(SHRT)가 과다복용이 의심되는 사람에게 나록손(naloxone)을 투여해야 합니다.

b) 학교 현장에 학교 커뮤니티 보건 간호사(SCHN)가 없거나 학교 커뮤니티 보건 간호사(SCHN)와 학교 보건실 담당자(SHRT)를 즉시 구할 수 없는 경우, 훈련받은 자원봉사자가 나록손을 투여할 수 있습니다.

3. 기록

a) 나록손 투여에 대한 문서화는 SCHN 이 학교장과 협의하여 완료합니다.

b) 모든 나록손 관리는 MCPS 규정 COB-RA, *사고 보고(Incident Reporting),* 및 Maryland Department of Health 지침에 따라 보고됩니다.

4. 재고의 교체

MCPS 와 DHHS 는 사용한 나록손 키트를 즉시 교체하도록 협력할 것입니다.

D. 부모/후견인 통지

1. 오피오이드 과다복용으로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학생에게 MCPS 소유지에서 나록손을 사용하게 될 때, 나록손이 투여된 학생의 부모/보호자에게 즉시 통지를 합니다.

2. MCPS 는 매년 이 규정에 대해 학부모/학생에게 통지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시행합니다.

E. 나록손의 개인적 소지

1. MCPS 직원들은 독립적으로 교육을 이수할 경우, MCPS 소유지에서 날록손을 휴대할 수 있습니다. 교직원은 MCPS 규정, EBJ-RA, *학교 응급치료 및 응급처치(Emergency Care and First Aid in Schools)*에 명시된 바에 따라 질병 및/또는 부상자의 응급처치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요약한 학교 응급처치 계획을 숙지해야 합니다.

2. MCPS 소유지와 학교 후원 활동 중에 날록손을 소지한 학생은 날록손을 소지한 것만으로 징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 학생들은 오피오이드 과다복용이 의심되는 경우, DHHS 또는 MCPS 직원의 도움을 받거나 911 에 연락할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F. 무료 또는 합리적 가격의 지원 및 도움

Maryland 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응급상황의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도움이나 의료지원을 제공하는 개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 어떠한 행위나 누락에 대해서도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지원 또는 원조가 합리적으로 신중한 방식으로 제공

2. 지원 또는 원조가 수수료 또는 기타 보상 없이 제공

3. Maryland 주에서 의료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면허 또는 인증을 받은 사람이 피해자 치료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게 되었을 때, 개인이 피해자에 대한 치료를 중단한 경우.

4. 학교 재고 날록손 대신에 개인적으로 취득한 나록손을 선의로 투여하는 사람은 Maryland 법 제 13-3108 조(a)의 면책 보호가 적용됩니다.

G. 추가 정보

약물 사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학생 또는 직원을 위해 Board Policy IGN, *Preventing Alcohol, Tobacco, and Other Drug Abuse in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MCPS Regulation IGO-RA, *Guidelines for Incidents of Alcohol, Tobacco, and Other Drug Abuse Involving Students* 에 따라 추가 지원 지침을 상세히 기술합니다.

관련 자료: *Annotated Code of Maryland*, Courts and Judicial Proceedings Article §5-518 and §5-522(b), Education Article, §4-106, §7-426 et seq, and §7-426.5, Health-General Article §5-603, §5-629, §13-3108(a); *Code of Maryland Regulations* 13A.05.05.05-.15

규정 변경사: 새규정, 2023 년 5 월 1 일

MCPS 차별금지 성명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MCPS)는 인종, 민족, 피부색, 조상, 출신국, 국적, 종교, 이민상태, 성, 성별, 성 역할, 성 표현, 성 취향, 가족 형태/부모 상태, 결혼 상태, 나이, 능력 상태(인지, 사회/정서, 신체), 빈곤, 사회경제적 상태, 언어, 또는 합법적이고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성향 또는 소속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차별은 우리 모두를 위한 형평성, 포용성, 수용을 창출, 육성 및 촉진하려는 우리 커뮤니티의 오랜 노력을 약화시킵니다. 교육위원회는 증오를 조장하고 학교 또는 교육구 운영 또는 활동에 상당한 방해를 일으킬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언어의 사용과/또한 이미지와 표시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교육위원회 정책 ACA,차별금지, 평등 및 공평과 문화적 능력(Nondiscrimination, Equity, and Cultural Proficiency)을 봅시다. 이 정책은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중요하며 특히, 개인의 실제 또는 여겨지는 인적 특성으로 교육적 결과를 예측해서는 안 된다는 교육위원회의 신념을 단호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또한, 공평성이 내재적 편견, 정당화되지 않은 다른 관행, 교육과 고용의 기회의 평등을 저해하는 구조적, 제도적 장벽을 식별하고 해결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MCPS는 또한, 보이스카우트/걸스카우트와 다른 지정된 청소년 그룹에 평등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MCPS 학생*에 대한 질문 또는 불평사항*	**MCPS 교직원*에 대한 질문 또는 불평사항***
Director of Student Welfare and Compliance Office of District Operations Student Welfare and Compliance 850 Hungerford Drive, Room 55, Rockville, MD 20850 240-740-3215 SWC@mcpsmd.org	Human Resource Compliance Officer Office of Human Resources and Development Department of Compliance and Investigations 45 West Gude Drive, Suite 2500, Rockville, MD 20850 240-740-2888 DCI@mcpsmd.org
1973년 504 장애법(Section 504 of the Rehabilitation Act of 1973) 에 따라 조정이 요구되는 학생용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에 따라 조정이 요구되는 교직원용**
Section 504 Coordinator Office of School Support and Well-being Office of Well-being, Learning and Achievement 850 Hungerford Drive, Room 257, Rockville, MD 20850 240-740-5630 504@mcpsmd.org	ADA Compliance Coordinator Office of Human Resources and Development Department of Compliance and Investigations 45 West Gude Drive, Suite 2500, Rockville, MD 20850 240-740-2888 DCI@mcpsmd.org
학생 또는 교직원*에의 성희롱 등, Title IX에 해당하는 성차별에 관한 조사나 불평사항	
Title IX Coordinator Office of District Operations Student Welfare and Compliance 850 Hungerford Drive, Room 55, Rockville, MD 20850 240-740-3215 TitleIX@mcpsmd.org	

*차별에 관련된 민원은 다음과 같이 다른 기관에 이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U.S.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EEOC), Baltimore Field Office, GH Fallon Federal Building, 31 Hopkins Plaza, Suite 1432, Baltimore, MD 21201, 1-800-669-4000, 1-800-669-6820 (TTY); Maryland Commission on Civil Rights (MCCR), William Donald Schaefer Tower, 6 Saint Paul Street, Suite 900, Baltimore, MD 21202, 410-767-8600, 1-800-637-6247, mccr@maryland.gov; 또는 U.S. Department of Education, Office for Civil Rights (OCR), The Wanamaker Building, 100 Penn Square East, Suite 515, Philadelphia, PA 19107, 1-800-421-3481, 1-800-877-8339 (TDD), OCR@ed.gov, 또는 www2.ed.gov/about/offices/list/ocr/complaintintro.html.

**본 통지는 개정된 연방 초등 및 중고등 교육법을 준수합니다.

안내서는 영어 이외의 언어와 미국 장애인 복지법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에 따른 대체 형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MCPS Office of Communications, 전화번호 240-740-2837, 1-800-735-2258 (Maryland Relay) 또는, PIO@mcpsmd.org로 연락하여 요청합시다. 수화 통역 및 기타 특수 보조 등의 제반 시설이 필요한 경우는 MCPS의 Office of Interpreting Services, 240-740-1800, 301-637-2958 (VP) 또는 mcpsinterpretingservices@mcpsmd.org 또는MCPSInterpretingServices@mcpsmd.org로 연락합시다.

2023년 7월